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요건 강화〉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72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4).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¹⁾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지배주주”라 하고, 이러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²⁾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제360조의24³⁾).

○ 이러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2011년 개정시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⁴⁾되었으며, 균형성 측면에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360조의25⁵⁾)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다수의 견해는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배주주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

3)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이 법이 일부개정된 당시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법 제3편제2절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을 설치한 이유는 특정 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사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5) 「상법」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재 9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행사를 보다 엄격화하려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예기치 못한 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당한 소수주주의 축출 및 조세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안 제360조의 24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u>100분의 95</u>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 --- <u>100분의 99</u> ----- ----- ----- ----- ----- ----- ----- -----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나. 구체적 검토

☐ 개정안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을 95%에서 99%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입법 연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혁 및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2011년 개정⁶⁾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801566호, 2008. 10. 21.)의 성안을 위한 법무부의 논의과정(2006년 회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을 보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95%를 주장하는 입장과 이 법의 다른 소수주주권의 기준을⁷⁾ 고려하여 97%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5)을 병렬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95%로 하는 방안이 채택됨.⁸⁾
- 또한, 해외 주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독일의 경우 주주총회는 자본금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청구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을 적정한 가액으로 지배주주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⁹⁾
- 영국의 경우 공개매수자는 대상회사 종류별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에서 대상회사 종류별 총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한 경

6) 2011. 4. 14. 법률 제10600호

7)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집중투표 청구권(제382조의2)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보유지분 기준은 3%임.

8)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사편]”, 2006. 12. p.410

9) 「독일 주식법」(법무부, “독일 주식법”, 2025.)

제327a조(현금보상에 의한 주식양도) ①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자본금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주요주주)의 청구에 따라 그 밖의 주주(소수주주)의 주식을 적정한 현금보상의 제공과 교환으로 주요주주에게 양도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제285조 제2항 제1문은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이 주요주주에게 귀속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우에는 공개매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의 매수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¹⁰⁾

- 일본의 경우 총주주의 의결권의 90% 이상을 소유한 특별지배주주는 회사와 자신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특별지배주주에게 매도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¹¹⁾

□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면, 현행법에 따른 지배주주 요건인 95%는 당초부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예견되는 부작용¹²⁾ 및 이점¹³⁾ 등을 심사시 종합적

10) Companies Act 2006 (UK Public General Acts 2006 c. 46)

§979(2) If the offeror has, by virtue of acceptances of the offer, acquired or unconditionally contracted to acquire-

(a) not less than 90% in value of the shares to which the offer relates, and

(b) in a case where the shares to which the offer relates are voting shares, not less than 90% of the voting rights carried by those shares,

he may give notice to the holder of any shares to which the offer relates which the offeror has not acquired or unconditionally contracted to acquire that he desires to acquire those shares.

11) 「일본 회사법」(법무부, “일본 회사법”, 2025.)

제179조(주식등매도청구) ① 주식회사의 특별지배주주(주식회사 총주주의 의결권의 10분의 9(이것을 상회하는 비율을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을 주식회사 이외의 자 및 당해자가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그 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식회사의 주주(당해주식회사 및 당해특별지배주주는 제외한다) 전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특별지배주주에게 매도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2)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수주주는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 및 남용 여지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13)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지배주주 측에서는 소수주주의 존재로 인한 주주총회 개최 등으로 인한 주주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소수주주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출자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종전 5% 기준 소수주주들은 출자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경영 참여도 불가

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의 강화를 위해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판단 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¹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이¹⁵⁾ 2025. 11.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6788-5055

능해지게 됨.

14)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은, 사건본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사건본인의 모회사인 피신청인이 84.96%를, 사건본인이 자기주식으로 13.14%를 각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합산하면 98.1%가 되므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근거로 제360조의24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28호, 제안일: 2024. 6. 13.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 ②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 ③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 ④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열람하도록 함.